

보도 일시	국회 본회의 통과 시 ※ 별도 문자 안내	배포 일시	2022. 9. 27.(화) 08:30
담당 부서 <총괄>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장 이창훈 (044-203-6648)
		담당자	사무관 이혜윤 (044-203-6683)

교육부 소관 5개 법안, 국회 본회의 통과

주요 내용

- ◆ 장애대학(원)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
- ◆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 근거 마련 및 초·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
- ◆ 원격대학(한국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)에 일반·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- ◆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
- ◆ ‘급여심의회’에 부양·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근거 마련

□ 교육부는 9월 27일(화),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, 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.

□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1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일부개정)】

□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장애학생지원 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.

- 또한,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한다.
- 아울러, 교육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·지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한다.
-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학(원)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장애대학(원)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【2. 초·중등교육법(일부개정)】

-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·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 학교가 포함된다.
 - 지금까지 초·중·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.
 - 그러나,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학교도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.
 - 이에, 「초·중등교육법」을 개정하여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여 각종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·개정하려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 - 이번 개정으로 법정 교육시간이 지속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이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【3. 고등교육법(일부개정)】

- 앞으로 원격대학(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)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.
- 원격대학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임에도 그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하였으나,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‘특수대학원’ 외에 ‘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(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)’까지 확대되어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.
- 또한,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,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.
- 이에 따라 앞으로 원격대학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위 및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, 재직자 등 학습자들은 다양한 실무경험 연계 교육과정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【4. 교육공무원법(일부개정)】

- 직계존비속의 사고·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, 공무상 부상·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5년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.
- 감염병 확산 대응 등 학교 현장의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교육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.
- 아울러, ‘특별채용’을 ‘경력경쟁채용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,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였다.

- 또한,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.

【5.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(일부개정)】

- 부양·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‘급여심의회’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.
- 또한,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(사업)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- 이를 통해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지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,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(사업)소득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【붙임】** 1. 9.27.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
2. 법안별 주요 세부 내용

담당 부서 <총괄>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창훈 (044-203-6648)
		담당자	사무관	이혜윤 (044-203-6683)
<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>	학생지원국 장애 학생진로평생교육팀	책임자	팀 장	구본억 (044-203-6776)
		담당자	사무관	최현정 (044-203-6312)
<초·중등 교육법>	학교혁신정책관 지방교육자치팀	책임자	팀 장	박진하 (044-203-7080)
		담당자	주무관	권정은 (044-203-7081)
	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	책임자	과 장	고영훈 (044-203-6746)
		담당자	사무관	황혜경 (044-203-6520)
	학교혁신정책관 학교정책과	책임자	과 장	강전훈 (044-203-6506)
		담당자	교육연구관	박남정 (044-203-6203)
	학교교육지원관 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	책임자	팀 장	유상범 (044-203-6433)
		담당자	교육연구관	김혁연 (044-203-7143)
<고등교육법>	평생직업교육국 이러닝과	책임자	과 장	안상훈 (044-203-6428)
		담당자	사무관	황현정 (044-203-6421)
<교육 공무원법>	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최보영 (044-203-6688)
		담당자	사무관	윤현아 (044-203-6940)
			교육연구관	이상모 (044-203-6483)
	사무관	김아름 (044-203-6970)		
	학교혁신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	책임자	과 장	조재익 (044-203-6369)
		담당자	사무관	권지은 (044-203-6467)
	고등교육정책관 대학교원지원팀	책임자	팀 장	홍수영 (044-203-6665)
		담당자	사무관	박수민 (044-203-6927)
국가교육위원회	책임자	과 장	김보경 (02-2100-3310)	
	담당자	사무관	황오일 (02-2100-3311)	
<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>	학교혁신정책관 교육협력팀	책임자	팀 장	이진화 (044-203-6466)
		담당자	사무관	유재명 (044-203-6179)

순	법률명	주요내용
1	<p>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</p> <p>김철민, 9765 김병욱, 17366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의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장애학생 지원센터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 •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 • 교육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·지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
2	<p>초·중등교육법</p> <p>주호영, 14161 김철민, 14698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, 교육횟수, 교육시간,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 관련 법령 제·개정 시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 협의 • 사전협의 범위,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3	<p>고등교육법</p> <p>박진, 6788 강득구, 8773 조명희, 14746 조경태, 13691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원격대학에 일반·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•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·운영 • 법 문언 중 '준수하다'라는 용어를 '지키다'로 변경
4	<p>교육공무원법</p> <p>정부, 5834 김병욱, 7139 유기흥, 15086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사휴직 사유 확대,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연장 •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, 교육공무원 겸임 범위 확대 • 마약류 중독자를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포함 •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
5	<p>사립 학교 교직원 연금법</p> <p>유기흥, 12271 정찬민, 12548 서동용, 14822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양·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공단 내 '급여심의회'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 •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(사업)소득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

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일부개정)
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장애대학(원)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.

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특별지원위원회 구성 등)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,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함을 규정한다.
- (장애학생지원센터장 자격 등)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한다.
- (개인별 교육지원계획 등)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한다.
- (국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·지정 등)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함을 규정한다.

동 개정으로 인해

-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학(원)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, 장애 대학(원)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	팀장 구분억(6776), 최현정 사무관(6312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특수교육 실태조사) ① (생략)</p> <p>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 <p>제29조(특별지원위원회)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<u>특별지원위원회</u>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30조(장애학생지원센터) ① 대</p>	<p>제13조(특수교육 실태조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개</u> <u>선하기 위하여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(특별지원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<u>특별지원</u> <u>위원회(이하 “특별지원위원회”라</u> <u>한다)</u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특별지원위원회의</u> 위원은 <u>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,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제30조(장애학생지원센터) ① 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·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<u>지원부서 또는 전담 직원을</u> <u>뒀으므로</u> 이를 갈음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② 장애학생지원센터(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<u>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</u>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<u>말한다</u>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1.·2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1.·2. (현행과 같음) 2의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 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 인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</p>
<p>3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3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<u>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③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제31조(편의제공 등)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.</p>	<p><u>추어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<u>제30조의2(개인별 교육지원계획)</u></p> <p>① <u>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31조(편의제공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1. ~ 5.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</p>	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3조(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)</u></p> <p>① <u>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(이하 “고등교육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<u>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·분석</u></p> <p>2. <u>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·보급</u></p> <p>3. <u>장애학생의 진로·취업 지원</u></p> <p>4. <u>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</u></p> <p>5. <u>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</u></p> <p>6. <u>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7.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 <p>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·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부 칙 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2 초·중등교육법(일부개정)

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이 각종학교까지 확대되고, 초·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·개정하려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

- (학교운영위원회)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하였고,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- (사전협의)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·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 실시, 교육횟수, 교육시간,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 관련 법령을 제·개정하려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였다.
 - 사전협의의 범위,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게 됨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법정 교육시간이 지속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던 초·중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,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지방교육자치팀	팀장 박진하(7080), 권정은 주무관(7081)
교육기회보장과	과장 고영훈(6746), 황혜경 사무관(6520)
학교정책과	과장 강전훈(6506), 박남정 교육연구관(6203)
2022교육과정개정지원팀장	팀장 유상범(6433), 김혁연 교육연구관(7143) 하세종 교육연구사(7033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 <p>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·중학교·<u>고등학교 및 특수학교</u>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23조의2(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 실시, 교육 횟수, 교육시간,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31조(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고등학교·특수학교 및 각종학교</u>----- 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부칙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제2조(법정교육에 관한 적용례)
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
시행 이후 교육과정에 법정교
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
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3 고등교육법(일부개정)

□ 「고등교육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원격대학에 박사학위과정이 가능한 일반 및 전문대학원 설치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원격대학(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)이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“특수대학원” 외에 “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(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)”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, 박사학위과정도 운영 할 수 있게 되었다.
-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,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 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, 사회에 인력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, 다양한 실무경험 연계 계속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이러닝과	과장 안상훈(6428), 황현정 사무관(642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의2(대학원의 종류) ① (생략)</p> <p>② 대학(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)에는 일반대학원·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,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, <u>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,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.</u></p>	<p>제29조의2(대학원의 종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원격대학에는 일반대학원·전문대학원(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) 또는 특수대학원-----.</p>
<p>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회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<u>준수하여</u>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(이하 “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”이라 한다)을 수립·공표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</p>	<p>제34조의5(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지키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④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<p>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(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)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<u>준수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⑤·⑥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지켜야</u></p> <p>-----.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3조의2(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)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4조의2(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) ① 제53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일계열</p>

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하여 관련 분야에서 재직 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의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사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, 인가의 기준 및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 부 칙 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2항 중 “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고등교육법」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대학원·전문대학원(의학·치의학·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) 또는 특수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4 교육공무원법(일부개정)

☐ 「교육공무원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확대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.

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가사휴직을 위해 가족의 간호가 필요함을 증빙할 필요 없이 부양 하거나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게 하였고, 공무상 질병·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대 5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, 교육공무원 간 겸임 범위 확대를 통해 유연한 인사 운용과 교육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하였다.
-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(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, 겸임, 휴직, 직위해제 및 복직)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.

☐ 동 개정으로 인해

- 교육공무원의 휴직을 확대하여 권익을 증진하고, 인사제도의 공정성 및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교육공무원의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위임받는 근거를 마련하여,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 (☎044-203+내선번호)
교원정책과	과장 최보영(6688), 윤현아 사무관(6940) 이상모 교육연구관(6483) 김아름 사무관(6970)
교원양성연수과	과장 조재익(6369), 권지은 사무관(6467)
대학교원지원팀	팀장 홍수영(6665), 박수민 사무관(6927)
국가교육위원회	과장 김보경(02-2100-3310), 황오일 사무관(3311)

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삭 제

2. ~ 4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10조의4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~ 3. (생 략)

<신 설>

제11조(교사의 신규채용 등) ① ~ ③ (생 략)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, 공개전형의 절차·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(특별채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<단서 신설>

-----.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의4(결격사유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제11조(교사의 신규채용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 필요한 자격요건-----

제12조(경력경쟁채용 등) ① ---

-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

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

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(이하 “경력경쟁채용시험”이라 한다)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----- . 다만, 제1호,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공개경쟁 채용시험-----

4. -----

---- 공개경쟁 채용시험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3호 -----

1. 2. (생략)

3.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·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

4. 교육경력,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

5. (생략)

②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

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다.

제17조(보직 등 관리의 원칙) ① ·

② (생략)

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(이하 “학급담당교원”이라 한다)으로 배정할 수 없다.

④ (생략)

제18조(겸임)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,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·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---- 사람을 -----
채용-----.

제17조(보직 등 관리의 원칙) ① 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
조의2제1항제1호 각 목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겸임) ① -----

----- 일반직공무원,
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-----

다.

② (생략)

제32조의2(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) ① ~ ③ (생략)

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략)

제33조(임용권의 위임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에게,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2조의2(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본인 -----

----- 명할 수
있고,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(「보험업법」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)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-----
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임용권의 위임 등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, 교육부장관에게,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40조(특별연수) ① ~ ④ (생략)

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, 반납하지 아니하면 그 특별연수 경비의 재원(財源)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2. (생략)

제44조(휴직)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,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제40조(특별연수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본
인-----

----- 명할 수 있고,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(「보험업법」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)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----- . ----- 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44조(휴직) ① -----

----- . -----

----- 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
요양이 필요한 조부모, 부모
(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),
배우자, 자녀 또는 손자녀를
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.
다만,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
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
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
있는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
로 한정한다.

10. ~ 12. (생략)

② 삭제

③ ~ ⑤ (생략)

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휴직기간
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
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
은 1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
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
수 있다. 다만, 「공무원 재해
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원 부상
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
은 3년 이내로 한다.

9. 조부모, 부모(배우자의 부모
를 포함한다), 배우자, 자녀 또
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
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. 다만,
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
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
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
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
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.

10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45조(휴직기간 등) ① -----
-----.

1. -----

----- 하되, 의학적 소견
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
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2. ~ 11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52조(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)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

2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

3.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

4.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

5. (생략)

제60조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)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「유

2. ~ 11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52조(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) -----

----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3조의2제1항-----
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5. (현행과 같음)

제60조(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채용 및 전직 등) ① -----

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국립·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61조(「지방공무원법」과의 관계) ①·② (생략)

③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부터 제9조까지, 제9조의2,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11조, 제22조, 제22조의2, 제23조, 제24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4, 제29조의5, 제30조, 제32조, 제34조, 제34조의2,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, 제39조, 제39조의2, 제6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채용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1조(「지방공무원법」과의 관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제30조

< 부 칙 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제4항, 제32조의2제4항, 제33조제1항, 제40조제5항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연장에 관

한 적용례)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직 하였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 및 전직에 대해서는 제12조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의4제1항 중 “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”를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제5호”로 한다.

제66조의6제1항 중 “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”를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”으로 한다.

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(일부개정)

□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일부개정을 통해 ‘급여심의회’에 유족급여 제한 여부를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하고, 공단의 권한에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(사업)소득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추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□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부양·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‘급여심의회’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.
- 또한,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 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(사업)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

□ 동 개정으로 인해

- 자녀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,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환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사학연금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담당자 연락처(☎044-203+내선번호)
교육협력팀	팀장 이진화(6466), 유재명 사무관(6179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공단의 권한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: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</u></p> <p>3. ~ 9. (생략)</p> <p>⑤·⑥ (생략)</p> <p>제42조(「공무원연금법」 및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의 준용)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, 급여의 사유,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8조,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, 제40조, 제41조,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4조부터 제65조까</p>	<p>제19조(공단의 권한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교직원,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</u>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·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(「공무원연금법」 및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의 준용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중 “제25조”는 이 법 “제31조”로,
「공무원연금법」 제40조제2항
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
의 “제26조”는 이 법 “제32조”로,
「공무원연금법」 제52조제5항의
“제31조와 제32조”는 이 법 “제3
6조와 제37조”로, “기여금”은 각
각 “개인부담금”으로 본다.

--“개인부담금”으로, 「공무원연
금법」 제63조제4항의 “「공무원
재해보상법」 제6조에 따른 공무원
재해보상심의회”는 “급여심의회”
로 본다.

< 부 칙 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
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9조제4항
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
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
용례) ① 제42조제1항의 개정규
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「공무원
연금법」 제63조제4항은 이 법
시행 전에 퇴직유족급여 사유가
발생한 사람에게 대해서도 적용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
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
급여분부터 적용한다.